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1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7. 7.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617,591,470원을 C의 대표이사인 E가 상여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그후 E는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B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4. E에 관한 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 후 B에게 같은 내용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B은 2018. 12. 19.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B은 위 통지를 받았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2. 28.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9. 6. B에게 종합소득세 287,900,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B은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9. 22. 기준 체납액은 318,129,56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1) B은 2019. 2. 28.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5. 30. B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30.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3. 4.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